

22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발표

-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159건 수사의뢰… 불법공급 점검 강화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 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
 -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 * 보통 매수자가 청약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요구
-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포기)
 -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21.上(247건/18,958), '21.下(125건/18,381), '22.上(168건/24,075), '22.下(101건/20,352)
 - **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
-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A씨(28세, 외손녀)는 B씨(외조모. '35년생 부모 특공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한 것으로 하여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허위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B씨를 전입신고 C쎄(A쎄의 모친)가 부양(3년간 주소지 (위장전입) 장애인 특동 외조모(장애인)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하여 BM 명의로 수도권에서『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음 * B씨는 남편(외조부)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 DM는 천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거리:112KM 하다가 태안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고 배우자도 태안에서 거주하고 허위 있는데도. 천안에 주소지를 허위로 주소지 유지(천안↔직장 112km)하면서 천안지역 유지 주소지 천안 거주지 태안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에 청약하여 당첨됨 * D씨는 천안에서 모친과 같은 주소지 유지 E씨(부인)는 세종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후 F씨(남편)와 이혼 위장이혼 하고도 4인가족은 함께 거주중이며. 허위 F F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17년생. Ε 이혼신고 '19년생 자녀 부양)으로 다시 세종에서 (위장이혼) 부인 남편 공공분양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혼전 이혼후 청약하여 당첨됨 신혼특공 신혼특공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GM(남편)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 ('19년생, '22년생)를 출생시부터 혼자 H 소유주택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H씨(부인)가 허위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G Н 별도세대 중이며. G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 유지 남편 부인 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신혼특공 유주택자 (한부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